EAID-CG

수 신: 미2사단/연합사단 소속 장병 및 군무원

제 목: 지휘 지침서 #5: 미2사단 괴롭힘 방지 및 대응 프로그램

1. 본 지침서는 모든 전의 미2사단 괴롭힘 방지 및 대응 프로그램 관련 지침을 대체함. 이는 폐지되거나 대체될 때까지 유효함.
2. 참조:
	1. 미 육군규정 600-20, 육군 지휘 지침서, 2020년 7월 24일
	2. 미8군 지휘 지침서 #2, 미8군 괴롭힘 방지 및 대응 프로그램
	3. 미2사단 지휘 지침서 #8, 위법행위 혐의에 관한 처분 보류 정책2023년 5월 18일
3. 미2사단/연합사단은 가치 기반 조직으로서 구성원 모두가 서로 및 타인에 대한 존중과 존엄성을 갖고 올바르게 대우할 의무가 있음. 미육군 소속 구성원이라면 어떠한 유형의 생활방식과 소통으로든 (예를들어, 비대면 및 대면) 모든 타인을 존중할 의무가 있음.
4. 모든 미2사단 구성원 특히 리더의 역할을 부여받은 인원은 솔선수범의 자세로 타인을 향한 폭력적인 대우 예방에 앞장서야 함.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미2사단/연합사단에 불명예를 불러올 뿐 아니라 부대의 전략적 영향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. 타인 혹은 타인의 소유를 향한 부당한 군기 잡기, 갑질, 그리고 차별적 따돌림은 금지되어있으며, 괴롭힘 관련한 혐의 입수 시 당사자들의 상황을 적극 고려하여 즉각적 및 개개인적인 조치가 내려질 것임. 부당한 군기 잡기, 갑질, 비대면 위법행위, 그 외 다른 위법행위들은 신뢰와 윤리를 훼손하며 지휘 환경 및 준비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. 모든 미2사단 구성원은 괴롭힘(군기 잡기, 갑질, 차별적 따돌림) 목격 시 지휘관/상관, MEO, 혹은 법집행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. 미2사단 구성원 중 비대면온라인을 통한 위법행위에 대한 피해를 겪거나 목격시 즉각적으로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할 것임. 그 외 신고기관과 관련 정보 접근 대안 매체는 다음을 포함함: 군인가족지원서비스, 군기회균등, 균등고용기회, SHARP, 그리고 미육군법집행기관. 모든 피해자 및 신고자는 보복 위협 및 앙갚음 행위로부터 보호될 것 임.
5. 발의. 본 지침서는 미2사단 기회 균등 부서에서 발의됨. 담당관 연락처는 미2사단 기회 균등 프로그램 관리관 DSN 315-756-7342임.

 CHARLES T. LOMBARDO

 Major General, USA

 Commanding